



현장기술자의 설계도서상 철근배근 하자 및 정착길이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김 상 수
(주)토탈지오이엔씨/대표이사

[1] 설계 및 시공이 분리·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본 자료는 (주)토탈지오이엔씨 김상수 대표이사가 수집한 판례(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를 단순 정리한 내용으로 법리적인 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설계변경과 관련한 법령 및 감리업무지침서의 제 규정과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는 반드시 적법하게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감리업무지침서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책임감리원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유

1. 설계 및 시공이 분리되어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건설기술관리법(1997. 1. 30. 법률 제5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위 법 제23조의2 제2항), 그 경우 건설업자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1997. 8. 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05-3은 건설공사의 계약자로 하여금 설계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위와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건설기술자는 오로지 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뿐 표준시방서의 설계면에 규정된 구조안전 등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의 판단에 시공기술자와 책임감리원의 책임의 분리 및 시공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있어 감리원 또는 감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하고(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8] 3. 마.),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4.3.에 의하면, 시공자는 현지역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며, 책임감리원은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다음 발주기관의 장의 방침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과 관련한 법령 및 감리업무지침서의 제 규정과 앞서 본 건설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는 반드시 적법하게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위 법령 및 감리업무지침서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책임감리원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심 공동피고인이 임의로 정정하여 준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한 피고인 1의 행위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설계자와 책임감리원, 시공기술자 사이의 업무범위와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1의 과실과 교각분열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초 종구형으로 설계되었던 교각의 구조를 티(T)자형으로 변경하면서, 단차가 있는 코핑(COPPING) 하단부를 기준으로 코핑길이에 맞는 장철근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코핑 중앙부위에서 철근을 좌우로 분리하여 배근하고, 나아가 위 분리 배근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착길이마저 확보하지 아니한 설계상의 하자에 있었고, 위와 같은 하자는 구조계산이나 역학계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험있는 건설기술자라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착공과 동시에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피고인 1이 위 변경된 설계도면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 위 코핑의 방향 및 길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철근의 배근 상태 및 정착길이의 적정성 여부조차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의 설계도상에 감리원이 임의로 정정하여 준 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면, 시공자에게 설계도서 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설계변경시 일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교각의 균열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피고인들의 주장은 정당

한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및 검토가 이루어졌더라도 배근 및 정착길이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